

기독교학문연구회 정관

2001년 11월 21일 제정

2010년 3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5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Korea Association for Christian Scholarship)라 칭한다.

제2조 본회의 본부는 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곳에 둔다. 단,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본회는 기독교학문의 이론 및 실제에 관한 제반 연구 및 이에 따른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학회지 ‘신앙과 학문’ 발간
- (2) 학술 연구발표회, 세미나, 강연회, 공동 연구
- (3) 기독교학문과 교육에 관련되는 제반 업무

제2장 회원

제4조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가. 개인회원: 각 학문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유자

나. 단체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학술 기관 및 단체

(2) 준회원은 기독교 학문에 관심을 가진 학사과정 학생이나 그에 상응하는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기독교 학문과 기독교교육 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로 한다.

제5조 본회의 정회원은 모든 학회의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회비의 액수는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회원은 하기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1) 본인이 탈퇴의사를 표명할 경우
- (2) 특별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3)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학회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3장 임원

제7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으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3명
- (3) 편집위원장: 1명
- (4) 총무: 1명
- (5) 감사: 2명
- (6) 이사: 20명 내외

제8조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으며, 편집위원장, 총무, 감사 및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9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10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조하여 대외협력, 연구, 학술을 총괄한다.

제11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의 편집 및 출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 총무는 본회의 조직, 학술사업 및 일반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3조 감사는 본회의 사업 전반과 제반 서무 및 경리 등 일체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4조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결의에 참여한다.

제4장 회의

제15조 본 회의에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를 둔다.

제16조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단, 회장 또는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 (1) 회칙의 개정
- (2) 임원의 선출
- (3) 예산 및 결산 승인
- (4) 기타 중요사항 결정

제18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들로 구성된다.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기획, 의결, 집행한다.

-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2)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사항
- (3) 사업의 계획
- (4) 학회지의 편집위원회 조직

제19조 이사회는 제20조에 규정된 사항들을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연구회

제20조 본 회의 사업을 돕기 위하여 제 4조에 규정된 회원들을 포함하는 학문그룹을 두고 연구회 또는 분과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장 편집위원회

제21조 본 회의는 학회지 발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를 결정한다.

제2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의 운영, 논문심사의 기준 및 절차를 위해서는 별도로 ‘편집위원회 규정’을 둔다.

제7장 재정

제23조 본 회의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제24조 본 회의의 예산·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고, 총회에서 감사가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25조 본 회의의 회계 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8장 부칙

제26조 본 개정회칙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